# 과천도시공사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0.02.05. 지침 제10호
개정 2023.02.01. 지침 제65호
개정 2026.09.21. 지침 제10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 평생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23.02.01.)

② 위원장은 경영부문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이 된다.(개정 2023.02.01., 2026. 9. 21.)

③ 위원은 각 부서대표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교육담당팀장이 되고, 서기는 본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.

1. 교육훈련 운영방향 결정
2. 교육마일리지 운영기준
3. 교육훈련 예산 조정
4. 기타 평생학습 관련사항

**제4조(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연 2회(상·하반기 각 1회)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, 부위원장 중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, 각 부서대표의 임기는 그 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임장 제출)** 위원회에 대리참석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해촉)**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촉하고,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①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

②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
③ 사망, 질병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

**제9조(회의록)**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제정 2020.02.05. 지침 제10호 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 (개정 2023.02.01. 지침 제65호 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개정 2026. 9. 21. 지침 제109호 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(제9조 관련)

| 20 년 월 일 제 회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서명록<br>20 년 월 일<br><br>과천도시공사 | | |
|---|---|---|
| 의안번호 | 안 건 | 심 의 의 결 사 항 |
| | | |
| 위 의결·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함. | | |
| 직 위 | 성 명 | 서명 날인 |
| | | |

[별지 제2호서식]

# 20 년 월 일 제 회 평생학습운영위원회 회의록 (제9조 관련)

| 진행(발언자) | 심 의 토 의 내 용 |
| --- | --- |
| | |